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계약 구비서류**(\*서류제출기간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 시 보내는 사람의 성함은 당첨자의 성함과 동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 상에 날인하여 등기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인감도장은 동봉금지,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중 '주택전시관 비치' 서류는 정당계약일 내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 서약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 지참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 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기관추천 (일반)특별공급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신청 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확인(공통서류만 제출)
제3자 대리인 (당첨자 검수일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 (\*서류제출기간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제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람)

※ 등기우편 접수 시 보내는 사람의 성함은 당첨자의 성함과 동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 상에 날인하여 등기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인감도장은 동봉금지,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중 '주택전시관 비치' 서류는 정당계약일 내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 서약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 지참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 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 하지 아니 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경제자유 구역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 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확인(공통서류만 제출)
제3자 대리인 (당첨자 검수일 /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람.(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특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및 소득 증빙 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공급유형		월평균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  
(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과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①, ②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 매출 기재된 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1)의 경우 ②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① 주택전시관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 시 구비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 구비서류(\*서류제출기간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 시 보내는 사람의 성함은 당첨자의 성함과 동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 상에 날인하여 등기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인감도장은 동봉금지,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중 '주택전시관 비치' 서류는 정당계약일 내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 서약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 거주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 지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 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비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 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소득 확인(주택전시관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주택전시관 비치
	○		재직증명서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 서류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현재 또는 작년 출산 휴가를 받았을 경우 : 출산 전월 휴가급여지급 명세서(월별)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제3자 대리인 (당첨자 검수일/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	○		위임장	청약자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입증서류 및 증빙서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① 근로자 및 자영업자, ②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① 홈택스 → ② 신고/납부 → ③ 세금신고 → ④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놓여준 특별세 과세 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 세무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소득 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번호로 만 19세 이상 성인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①,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매입, 매출 기재된 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1)의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① 주택전시관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계약 구비서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계약 구비서류(\*서류제출기간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 시 보내는 사람의 성함은 당첨자의 성함과 동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 상에 날인하여 등기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인감도장은 동봉금지,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중 '주택전시관 비치' 서류는 정당계약일 내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 서약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 거주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 지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 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 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 으로 봄(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 1년 근로 / 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주택전시관 비치)										
	○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혼인관계 증명서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혼인적령 18세) 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내역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 하여 "상세" 발급. • 직계 존·비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입양의 경우										
	○		재직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인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전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포함하여 발급. • 정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명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배 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증명서류)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서류구분</th> <th>확인자격</th> <th>비고 (소득세납부 입증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td> <td>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td> <td>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td> <td rowspan="2">※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참고</td> </tr> <tr> <td>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td> <td>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td> </tr> </tbody> </table>	구분	서류구분	확인자격	비고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참고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
	구분	서류구분	확인자격	비고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근로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참고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한 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7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제3자 대리인 (당첨자 검수일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	○		위임장	청약자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비서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비서류(\*서류제출기간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람)

※ 등기우편 접수 시 보내는 사람의 성함은 당첨자의 성함과 동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 상에 날인하여 등기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인감도장은 동봉금지,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중 '주택전시관 비치' 서류는 정당계약일 내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동 서류	○		특별공급 서약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 거주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 지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 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 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 으로 봄(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주택전시관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제3자 대리인 (당첨자검수일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비서류** (\*서류제출기간 내 특별공급 구비서류와 계약체결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 시 보내는 사람의 성함은 당첨자의 성함과 동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 상에 날인하여 등기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인감도장은 동봉금지,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중 '주택전시관 비치' 서류는 정당계약일 내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 서약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주택전시관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 거주사실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 지참 ※ 계약서 작성 방문시 인감도장 지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피부양 직계 존-비속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 신청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 하지 아니 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 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당첨자검수일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 등 모든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표기되어 발급하시기 바람.